

대법원 2023도1707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전 해양수산부 차관인 피고인이 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로 파기환송 후 재상고된 사건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일부 유죄, 일부 이유무죄)하였음(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07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사건의 개관

▣ 피고인의 직위

- 2014. 8. ~ 2015. 10. 20.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
- 2015. 10. 21. ~ 2017. 6. 해양수산부 차관

나. 공소사실의 요지

- ▣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이하 '이 사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으로 인한 권리남용권리행사 부분(피고인과 조○○의 공동범행)

- 피고인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인 조○○과 공모하여 해양수산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2015. 1. 20.경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A, B 및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인 C로 하여금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이 사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피고인의 단독범행)
 - 피고인은 해양수산비서관 또는 해양수산부 차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2015. 2.경부터 2016. 7.경까지 해양수산부 공무원 및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인 A, B, C¹⁾ 등 8인, 위원회에서 지원근무를 하거나 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D, E, F로 하여금 '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비롯한 위원회의 동향을 바이버(Viber, 보안성이 뛰어난 모바일 메신저) 내 단체 채팅방을 통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통해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2. 소송경과

- 파기환송 전 제1심 : 일부 유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일부 이유 무죄, 일부 이유 공소기각
- 파기환송 전 원심 : 일부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 일부 이유 무죄, 일부 이유 공소기각
- 파기환송심 : 일부 파기환송[① 이 사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부분, ②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부분(유죄 부분 포함)], 검사의 나머지 상고기각
- 파기환송 후 원심 : 일부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부 이유 무죄

[소송의 경과 표 삽입을 위한 여백]

1) 이하 비실명처리는 보도자료에서의 비실명이고, 판결문 비실명과 일치하지는 않음

공소사실의 요지		죄명	제1심	환송 전 원심	환송심	환송 후 원심
1. 위원회 설립준비 방해 관련 범행	이 사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지시 (조○○과 공동범행)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무죄	무죄 (검사 상고기각)	이유 무죄
		A, B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사 상고 이유 있음 (실질적 파기부분)	유죄
2.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범행	바이버(Viber) 단체 채팅방을 통한 동향 파악 및 보고 지시	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유죄 (피고인 항소기각)	유죄	유죄
		A, B, C 등 5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유 무죄	검사 상고 이유 있음 (실질적 파기부분)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통한 동향 파악 및 보고 지시	D, E,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범행 제외)	유죄	유죄 (피고인 항소기각)	유죄	유죄
		A, B, C 등 8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범행 제외)			이유 무죄	검사 상고 이유 있음 (실질적 파기부분)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범행	이유 무죄	이유 무죄 (검사 항소기각)	이유 무죄 (검사 상고기각)	이유 무죄

☞ A, B: 해양수산부 공무원, C: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

D, E, F: 위원회에서 지원근무를 하거나 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 원심의 유·무죄 판단 이유

- 이 사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과 관련된 A, B(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 - **유죄**

-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수정에 관한 조○○의 지시를 해양수산부 측에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모'), ②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외형적으로 해양수산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며, 세월호진상규명법의 취지에 반하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행위는 해양수산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일반적 직무권한' 의 '남용'), ③ 피고인이 A, B로 하여금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이 사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위 공무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에 해당함(☞ ③ 부분은 환송판결의 기속력)

■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와 관련된 A, B, C 등 8인(해양수산부 공무원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 - **유죄**

- ①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외형적으로 해양수산비서관 또는 해양수산부 차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는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보장하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침해하여 해양수산비서관 또는 해양수산부 차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 직무권한' 의 '남용'), ② 피고인이 공무원인 A, B, C 등 8인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에서 위원회로 파견된 위원회 직원을 통해 위원회 내부 정보를 취득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에 해당함(☞ ② 부분은 환송판결의 기속력)

■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와 관련된 D, E, F(위원회에서 지원근무를 하거나 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 - **유죄** ☞ 환송판결의 확정력에 따라 환송 전 원심의 판단을 따름

-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외형적으로 해양수산비서관 또는 해양수산부 차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는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보장하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침해하여 해양수산비서관 또는 해수부 차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 공무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이 사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과 관련된 C(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 - **이유무죄** ☞ 환송판결의 확정력에 따라 환송 전 원심의 판단을 따름

-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외형적으로 해양수산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남용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실무 담당자인 C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와 관련된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 - **이유무죄** ☞ 환송판결의 확정력에 따라 환송 전 원심의 판단을 따름

- 환송 전 원심은, D 등이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이었고 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을 문건에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해양수산비서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

상 다룰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182 판결 등)

- ▣ 공모공동정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나. 판결 결과

-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와 관련된 D, E, F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관련

-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 나머지 상고이유 관련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²⁾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2) 이 사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과 관련된 A, B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와 관련된 A, B, C 등 8인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범행 제외)